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9. 7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인회 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1조 제1항제4호)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
요구한 경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1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 ~ 3 (생략)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1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1 ~ 3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4.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 요구한 경우</u></p> <p>② ~ ③ (원안과 같음)</p>